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9
------	------

제출일자 : 2022. 7. 13.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21. 12. 24. 개정,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출생한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새로 태어난 영아”를 지칭하는 용어를 “출생아동”으로 통일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별지 서식)
- 나.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기준 및 신청서류를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과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라.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안 제9조)
- 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명시 등 출산축하금 신청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서식)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6. 8. ~ 2022. 6. 28.):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의견일부반영(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유아를”을 “출생아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생아 출산”을 “출생아동 출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신생아의 출산일”을 “출생아동의 출생일”로, ““금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를 ““구”라 한다)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생아”를 “출생아동”으로, “금천구 거주일”을 “구 거주일”로, “금천구에”를 “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생아가”를 “출생아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동”을 “출생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생아”를 “출생아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생아가”를 “출생아동이”로, “출생아별”을 “출생아동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생아”를 “출생아동”으로, “금천구”를 “구”로,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별지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위	셋째 [ ], 넷째 이상 [ ]	여 [ ]	위	넷째 이상 [ ]						
<p>본인은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출생아의 이름·생년월일, 신청계좌정보)에 동의합니다.</p> <p>[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p>		<p>본인은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집목적</th> <th>수집항목</th> <th>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td> <td>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내거주기간, 출생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순위, 지급신청계좌정보</td> <td>수집일로부터 3년</td> </tr> </tbody> </table>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금천구 출산축하금 신청이 불가합니다.</p> <p>[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p>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내거주기간, 출생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순위, 지급신청계좌정보	수집일로부터 3년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관내거주기간, 출생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순위, 지급신청계좌정보	수집일로부터 3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예산 편성 이후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양고은
연 락 처	2627 - 1414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2.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19]

**제5조(지원대상자)**

-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금천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③ 출산축하금 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등거린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 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
- ④ 해당 출생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6조(지원기준 등)**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

일 경우 출생아별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30만원
2. 둘째아 50만원
3. 셋째아 70만원
4. 넷째아 이상 100만원

②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금천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9]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출산축하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대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1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19>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19>]

**제10조** 삭제 <2019.7.19.>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제590호, 2009.8.1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684호, 2011.10.2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046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